

전주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가단30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원고 보조참가인A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1. 3. 9.

판결 선고2021. 3.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 체결된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8. 7. 5. 접수 제30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4. 27.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E은 이를 '2016. 5.부터 2020. 6.까지 매월 25일에 100만원씩 분할 변제하되,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및 이자와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이 1회 이상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참가인으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 한도 6,000만원, 보증기간 2020. 12. 25.까지로 정하여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참가인에게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F 외 1필지 G건물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위 G건물 H호에 대하여 2017. 6. 2.,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6. 5. 각 경매신청을 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I 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J 강제경매), 원고 요청으로 위 각 경매신청을 2018. 3. 27. 및 2017. 11. 13.에 취하해주었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 소유의 위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K), 참가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9. 3. 20. 6,392,552원을 배당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원고로부터 2016. 6. 29.부터 2018. 3. 8.까지 합계 2,100만원(= 2016. 6. 29. 50만원 + 2016. 7. 7. 100만원 + 2016. 7. 21. 50만원 + 2016. 7. 26. 50만원 + 2016. 8. 18. 50만원 + 2016. 9. 6. 200만원 + 2016. 9. 20. 100만원 + 2017. 11. 10. 1,000만원 + 2018. 3. 8. 500만원)을 변제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6.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1억 2,4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8. 7. 5. 접수 제307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채권최고액 1억 200만원인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 2018. 7. 5. 말소되었다.

바. 다른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2019개회5830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참가인의 확정채권액은 1,400만원이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된다면 부인권 행사의 형성적 효과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원상회복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제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인대상 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한 사실, E 및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E 및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7. 6. 2. 및 2017. 6. 5.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원고 요청으로 위 각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다른 채권자이자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8,500만원과 원고의 다른 채권자이자 오빠인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3,000만원을 인수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참가인에게 변제한 1,000만원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수수된 돈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200만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G건물 H호에도 채권최고액 7,140만원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참가인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2017. 11. 10.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 중 1,000만원을 원고 대신 참가인에게 변제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391조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원고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부인권 행사시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갑 9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이 8,500만원인 사실, 2020.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8,000만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개인회생사건에서의 확정채권액인 1,400만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1. 1.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21. 2.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억 8,000만원에서 위 8,500만원을 공제한 9,500만원과 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인 1,400만원 중 더 적은 1,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이 제기한 소를 수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2021. 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진

별지